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74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복기왕 · 허종식 · 문진석
이인영 · 서영교 · 박민규
김승원 · 최혁진 · 엄태영
임호선 · 안도걸 · 송재봉
정일영 · 윤종균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립 근거와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모범운전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모범운전자가 교통경찰 보조, 교통안전 캠페인 등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지원 근거도 부족하여 제도적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 · 조직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모범운전자의 공익적 활동 중 부상 · 사망 · 질병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과 참여 동기를 높여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함(안 제119조의2).

나.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9조의3).

다.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지역간 모범운전자의 정보 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고, 총회,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원과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119조의4).

라.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함(안 제119조의5).

마.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를 소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모범운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19조 6).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및 질서 유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모범운전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안 제119조의8).

사.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모범운전자연합회, 그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9조의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장의2(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의2 모범운전자 및 모범운전자연합회

제119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①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9조의3(정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9조의4(조직 및 구성) ①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지역간 모범운전자
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②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총회,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를 둔다.

③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과 직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④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5(활동)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하 “교통경찰”이라 한다)의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2.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3. 교통행정 캠페인 행사
4.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활동
5. 그 밖에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9조의6(모범운전자 등의 소집 및 교육)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를 소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모범운전자를 대상으로 제119조의5에 따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집 및 활동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7(복장착용 등) ① 모범운전자는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및 질서유지 등 활동을 하는 때에는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및 질서유지 등 활동을 수행함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모범운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모범운전자는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

범운전자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모범운전자 또는 모범운전자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모범운전자의 신분증, 복장 및 경력증명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8(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의 제119조의5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가 제119조의5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거나 제119조의6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도중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가 제119조의5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거나 제119조의6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도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

료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9조의9(지도·감독) ① 경찰서장은 모범운전자가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통질서유지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모범운전자연합회 지회에 대하여 그 운영 등을 각각 지도·감독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9조의8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9조의10(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모범운전자연합회, 그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운전자연합회, 그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별 활동실적의 평가·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11(금지 행위) ①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지회(그 대표자와 구성

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모범운전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지회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②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지회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제119조의1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가 아니면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0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19조의12를 위반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그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u>	<u><삭 제></u>
<u>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u> <u>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	<u><삭 제></u>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장의2 모범운전자 및

모범운전자연합회

제119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①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9조의3(정관) 모범운전자연합

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신 설>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9조의4(조직 및 구성) ①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지역간 모범운전자의 정보 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②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총회,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를 둔다.

③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과 직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④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

<신 설>

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5(활동)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하 “교통경찰”이라 한다)의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2.交通安全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3. 교통행정 캠페인 행사

4.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활동

5. 그 밖에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신 설>

제119조의6(모범운전자 등의 소집 및 교육)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를 소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

<신 설>

서장은 모범운전자를 대상으로 제119조의5에 따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집 및 활동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7(복장착용 등) ① 모범운전자는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및 질서 유지 등 활동을 하는 때에는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및 질서 유지 등 활동을 수행함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모범운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모범운전자는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범운전자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모범운전자 또는 모범

<신 설>

운전자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모범운전자의 신분증, 복장 및 경력증명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8(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의 제119조의5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가 제119조의5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거나 제119조의6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도중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신 설>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 범운전자가 제119조의5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거나 제119조의6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도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9조의9(지도·감독) ① 경찰서장은 모범운전자가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통질서유지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하여,

<신 설>

<신 설>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모범운전자연합회 지회에 대하여 그 운영 등을 각각 지도·감독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9조의8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9조의10(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모범운전자연합회, 그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운전자연합회, 그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별 활동실적의 평가·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11(금지 행위) ① 모범운

전자연합회와 지회(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또는 모범운전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지회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의 명의를 훼손하는 행위

②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지회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u><신 설></u>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u><신 설></u> ② ~ ④ (생략)	<u>제119조의12(유사명칭의 사용금지)</u> 이 법에 따른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가 아니면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0조(과태료) ①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제119조의12를 위반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그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u> ② ~ ④ (현행과 같음)
--	--